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 |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 | 규정번호 | 3-1-19 |
| | | 제정일자 | 2019.02.25. |
| | | 개정일자 | 2020.06.01. |
| | | 개정차수 | 2차 |
| | | 소관부서 | 혁신지원사업단 |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'혁신지원사업'이라 한다)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,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 및 적용) 이 규정은 2019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 공고에 근거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

제3조(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) ① 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·의결 기구로 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구성인원은 내부위원 10명 이내, 외부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한다.

③ 교무입학처장, 학생성공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, 전략기획처장, 행정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외부위원은 산업체, 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가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) 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③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
④ 기타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최종 결재권은 위원장에게 있다.

②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③ 위원장은 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결재 후,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혁신지원사업단 및 성과관리

제7조(혁신지원사업단)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혁신지원사업단을 직속기관으로 둔다.

② 혁신지원사업단의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사업실무책임자는 행정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며,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혁신지원사업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④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, 산하기관으로 자체평가위원회와 성과관리팀을 설치 할 수 있다.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혁신지원사업단장의 추천에 의해

총장이 위촉하며, 내·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 한다.

1. 혁신지원사업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
2. 혁신지원사업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
3.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운용 및 집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혁신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

제9조(성과관리팀) ① 혁신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산하에 성과관리팀을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내부위원 7인 이내로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, 팀장을 임명한다. 성과관리팀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

③ 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
1. 자체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
2. 자체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개발에 관한 사항
3.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
4.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장 사업비관리

제10조(사업비관리근거)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감독 기관 및 유관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

제11조(회계)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.

제12조(사업비집행기본원칙)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고한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혁신지원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.

③ 혁신지원사업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.

④ 혁신지원사업비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 집행하며, 관련 법률·법령·규칙에 준하여 집행해야 한다.

⑤ 운영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 할 수 있다.

⑥ 혁신지원사업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중점으로,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사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.

제5장 기타

제13조(세부지침) ①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.

② 혁신지원사업비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.

③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3조(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) 2항과 제7조(혁신지원사업단) 2항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